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1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5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SG Center

- 이중중대성 평가 – 첫 번째 보고에서 배운 핵심 교훈

세무 및 법률정보

- 국세청 2024 년 세법 집행기준 개정
-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올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ESG/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올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올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올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5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출처: 금융감독원 2024.10.18]

개요

I.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합니다.

* 지정제도 개요

- (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직권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II.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1,234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 대비 27사 감소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 이 중 540사는 '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입니다.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4.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a)			비상장(b)			합계(a+b)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지정(①)	178	299	477	6	23	29	184	322	506
직권지정(②)	103	329	432	253	43	296	356	372	728
합 계(①+②)	281	628	909	259	66	325	540	694	1,234

2. 주기적 지정 현황(506사)

□ (신규 지정: 184사)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既 지정된 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2사
 * 주기적 지정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0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입니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7사, 5천억~2조원: 39사 등

□ (연속 지정: 322사) '22~'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3. 직권 지정 현황(728사)

□ (신규 지정: 356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6사, 코스닥 63사, 코넥스 24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입니다.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의 順

□ (연속 지정: 372사) 既 지정대상인 총 372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

신규 지정사유*		회사 수		
		'24.10차	'23.10차	증감(증감율)
주기적지정		184	183	1 (0.6)
직권 지정	상장예정	238	202	36 (17.8)
	재무기준(3년 연속영업손실 등)	53	74	△21 (△28.4)
	관리종목	14	16	△2 (△12.5)
	최대주주(3년간 2회) /대표이사(3회) 변경	19	15	4 (26.7)
	감리조치	22	20	2 (10.0)
	기타	10	25	△15 (△60.0)
	소 계	356	352	4 (1.1)
합 계		540	535	5 (0.9)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Ⅲ.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② (제출방법)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 (계약체결)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5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24.10.15.	'24.10.29.	'24.11.12.	'24.11.19.
사전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 (2주내)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금감원)	⇒ (2주)
		본통지대상 선정 및 통지* (금감원→회사)	⇒ (1주내)
			재지정 요청 (회사→금감원)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IV.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입니다.

◦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참고로,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http://eacrs.fss.or.kr>)에 추가하였음

■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요

I. 개요

24.11.13(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1.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구체적인 행사자, 대가 수수여부(콜옵션 제3자 양도시), 지급금액 등(기업공시서식 개정 예정(금감원))

한편,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은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법(소각 또는 재매각 등) 등(기업공시서식 개정 예정(금감원))

2.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하여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한다.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70% 미만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통상의 사유(자금조달, 자산매입 등)를 이유로 최저한도(70%)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였다.

한편,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행 규정은 전환가액 산정시 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만 납입일 기준 시가를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배정자가 정해져 있어 청약일이 의미가 없음에도 일부 기업들이 임의로 이사회 결의일 등을 청약일로 정하고,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여 시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하였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금번 금융위 의결 후 관계기관·기업 등의 준비*를 거쳐'24.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시시스템 구축 및 공시서식 마련(금감원) 등

ESG 센터
02 - 6916 - 5919

이중중대성 평가 - 첫 번째 보고에서 배운 핵심 교훈

저자 : Alex Hindson, Partner and Head of Sustainability, Consulting, Kate Stimson, Senior Manager, Consulting and Simona Villa, Manager, Consulting

번역 및 편집 : 오지형 한올회계법인 ESG 센터장

(이하는 Crowe US 에서 공개한 Article 을 원문으로 하였으며, 원문의 의미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 및 수정하였습니다.)

이중중대성 평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미래를 위해 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이중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DMA)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영 활동의 일환이므로, 기업은 이 프로세스를 좀더 폭넓은 지속가능성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내재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신중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CSRD 구현의 일환으로 이중중대성 평가(DMA)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우선적인 목적은 기업에서 보고해야 하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내에서 중요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토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중대성 평가는 규정 준수와 보고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또는 평가 결과)은 이중중대성 평가가 기업에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 개선을 추진하는 데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권고 사항

이중중대성 평가를 기업의 보고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

기업에서 이중중대성 평가를 '살아있는 문서'로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진 및 이사회와 결과에 대한 논의

모든 변화관리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경영진 및 이사회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중중대성 평가도 유사합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중중대성 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세스의 결과는 신중하게 보정된 후 경영진과 공유하여 관련 ESRS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결과와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유지 관리 책임의 부여

이중중대성 평가가 처음 수행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외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중중대성 평가 연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중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의 ownership 과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 지속가능성 책임 매트릭스 내에서 적절한 팀의 계획에 할당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견고한 감사 추적 대응

이중중대성 평가는 점차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외부 기관의 감독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평가에 사용된 판단과 발견된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강화된 감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의 변화 사항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4. 시스템의 비용 및 장점 평가

기업은 GRC 방법론과 같이 IT 시스템 내에서 이중중대성 평가를 관리하는 것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감사를 관리하고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판단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속가능성(또는 보고)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것과 IT 기술에 투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고려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고려

앞서 설명한 프로세스는 초기 이중중대성 평가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ESG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의존합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발전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홍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점진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CSRD 보고 요구 사항은 이 과정의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다른 보고 프레임워크에서도 곧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력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추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중점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국세청 2024년 세법 집행기준 개정

국세청 2024년 세법 집행기준 개정

국세청은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세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세목별 집행기준을 발간하여 꾸준히 제·개정 해왔습니다.

2024년 10월, 국세청은 14개 세목에 대한 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최신 세법령, 대법원 판례, 심판례 및 해석례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문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재산의 실질 귀속자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신설
-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구체화 등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가상자산 압류 및 압류시 체납자 통지규정 신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양도 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등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 반영

○ 법인세 집행기준

- 가상자산 취득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조문 신설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취득가액 특례 등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 반영

○ 국제조세 집행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글로벌최저한세 신설 조문 등 개정사항 반영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접대비의 명칭변경 반영 및 기부금과의 구분기준 제시
 - 비과세 소득의 범위변경
 - 배당가산을 변경에 따른 금융소득 계산사례 전면수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세대 범위 및 중과세율 적용 유예
 -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등 최근 개정사항 등 반영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 변경 및 합산배제되는 부속토지의 추가 등 최근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반영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분리 규정 등 최근 개정사항 반영
-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 단단계 과세에서 단단계 과세로 과세체계 전환
 -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 관련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등의 최근 개정 법령 반영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한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 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및 면세요건 명확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등 최근 개정 법령 반영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23 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 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 억 원 미만
 -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 억 원 미만
- 2025 년에 2024 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3%(최소 1 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간 : 2024 년 11 월 1 일 ~ 2024 년 12 월 2 일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2023 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 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 억 원 미만
 -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 억 원 미만
- 2025 년 투자금액을 2024 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기간 : 2024 년 11 월 1 일 ~ 2024 년 12 월 2 일
 -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500억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15% 이상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법인-595, 2024.10.27)

(질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15 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 100 조의 18 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회신)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부 4571, 2024.11.05)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3.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5.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2019.3.11.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3.7.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리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재산 2022-614, 2024.11.15)

(사실관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A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A 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B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 '18.1 월 B 벤처투자조합은 C 사에 투자하여 신주 취득

○ '21.12 월 B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투자조합이 보유 중이던 C 사 주식 중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인 A 사에 현물 분배

○ A 사는 C 사 주식을 양도할 예정

(질의요지)

○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T Consulting ▪ CRM / Risk Management 등 ▪ ESG 전략 및 시스템 구축자문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